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포항의료원 종합감사 -

2019. 6. .

3. 처분요구일람표

1. 사무직 직원 채용 부적정 (주의)	3
2. ☑☑☑과 및 ☒☒☒☒☒과 설치·운영 부적정 (통보)	5
3.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통보)	7
4. 물가수당 신설 및 최저임금지급 부적정 (통보)	9
5. 의료장비 구매 부적정 (주의)	12
6. 계약포기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미이행 (주의)	16
7. 의료폐기물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18
8. 장례식장 물품 판매가 결정 등 부적정 (시정)	20
9. 장의차량 운송업체를 통한 사망자 이송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5
10.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부적정 (주의)	27
11.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부적정 (주의)	29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직 직원 채용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포항의료원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시 또는 전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20조의 3에 따르면 채용시험은 서류전형·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7. 2. 10. 회계·경리업무와 기획·홍보업무를 처리할 행정사무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직원채용공고를 하면서 남자의 경우 균필한 자(면제자 포함)의 자격을 요구할 뿐 아무런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서류전형합격자의 합격배수 등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2. 경 응시자 18명에 대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당초 채용공고조건에 정한 자격과 경력이 없는데도 아무런 기준 없이 내부인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대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서류전형 합격자 @@@ 등 6명 만을 결정하고 12명은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불합격처리 하였다.

그 결과 불합격처리 된 12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전형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최종 채용된 %%%과 ***은 면접전형에서 경쟁자가 줄어들어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인사규정과 채용공고와 다르게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과 및 ☒☒☒☒☒과 설치·운영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위 관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의료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고, 특히 의료수익보다 의료비용 상승률이 2배가량 높아 2018년 결산결과 의료손실은 2,587백만 원이나 적자를 보게 되었다.

[표1] 최근 3년간 의료손익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6대비 상승률
의료수익	22,720,030	23,949,685	25,645,492	12.9%
의료비용	23,303,328	25,734,392	28,232,789	21.2%
의료이익	△583,297	△1,784,706	△2,587,297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 3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내과·외과·☒☒☒☒☒과·☑☑☑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포항지역에는 ☑☑☑과, ☒☒과와 동일한 민간 진료과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민간병원¹⁾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출산, 민간병원 증가, 인구감소 등 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진료과의 수익이 의료직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인근지역에 동일 진료과가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어 경쟁력이 없으면서 종합병원 요건충족에도 필요없는 진료과는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1) 포항****병원, **포항병원, 포항**병원, ****병원(이상 종합병원), **아동병원, 포항**병원, **아동병원, ****병원 등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최근 2년간 진료수입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수익성이 낮은 ☑☑☑과와 ☒☒☒☒☒과를 의료법령상 종합병원 유지를 위해 둘 중 하나만 필수 진료과 인데도 계속 설치·운영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표 2] 최근 2년간☑☑☑과 및 ☒☒☒☒☒과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진료과	인건비					의료수익			손익현황
	의사 급여		간호직 급여		총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총계	
☑☑☑과	106,335	106,633	45,012	48,927	306,907	71,371	61,940	133,311	△173,596
☒☒과	21,513	191,935	15,812	49,016	278,276	44,950	79,802	124,752	△153,524

조치할 사항 포항의료원장은

해당 진료과의 수익이 의료직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인근지역에 동일 진료과가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어 경쟁력이 없으면서 종합병원 요건충족에도 필요없는 진료과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실
내 용

포항의료원 「연봉제규정」 제26조와 「의사 보수 및 성과급 지급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직접진료의사의 성과연봉은 진료실수입액이 진료목표액을 초과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의료원장은 당해 의사의 월평균 보수액, 최근 5년간 각 진료과별 총의업수입 및 진료실수입의 분석자료, 당해 연도 병원 의료수익 목표액, 수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과별(개인별) 및 과별 공동목표를 진료실수입액을 기준으로 진료목표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제3장 제4절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원장은 순수익의 일정비율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등 원가를 감안한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위 관서 의료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의료수가는 2017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83%, 2018년의 경우 1.66%, 2019년 경우 1.9% 각각 인상되었다.

따라서 진료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 당해 의사의 월평균 보수액과 최근 5년간 진료과별 의업수입, 수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진료목표액을 설정한 뒤 지급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최근 3년간 진료성과급 목표액을 설정하면서 위 규정과는 다르게 합리적인 기준 없이 최근 3년간 진료과별 의업수입의 47% 수준(최저 20%)에 불과한 진료성과급 목표액을 설정한 뒤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15%인 2,392,431천원을 지급하였다.

[표] 주요 진료과 최근 3년간 진료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성명	진료과	연봉액				진료목표액				진료실적			성과급 지급액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6	'17	'18
		211	211	211	211	1,320	1,280	1,200	1,200	2,968	3,012	3,478	90	98	144
		204	209	209	209	960	960	960	960	2,664	3,870	4,451	156	208	305
		287	287	287	287	960	960	960	960	2,960	3,823	4,633	104	136	199
		145	157	166	166	360	360	360	360	1,521	1,492	1,241	140	136	105

더욱이 최근 3년간 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진료목표액은 전혀 변동이 없어 해마다 진료성과급 부담은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의사직의 진료성과에 따른 실적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진료성과급이 연봉 동결에 따른 급여인상 수단으로 변질되고 위 관서 의사 인건비 증가와 의료이익 손실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표] 최근 3년간 의료수익/비용, 의사직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6년 대비 증가 비율
의료수익	25,645	23,949	22,720	12.9%
의료비용	28,232	25,734	23,303	21.3%
의사직1인당인건비	218	192	184	18.5%

조치할 사항 포항의료원장은

우수 의료진 확보 및 진료실적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적절한 진료성과급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물가수당 신설 및 최저임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포항의료원 「보수규정」 제4조 내지 제11조에 따르면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초임호봉 확정, 호봉승급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급수별·호봉별로 차등화 된 임금지급 체계를 마련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르면 위 의료원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²⁾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수당 등)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의 구체적인 증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하위 급수 및 호봉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 저촉 되는 수준임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단체 협약을 거쳐 「보수규정」의 기본급표 등을 개정하여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인상되자 위 지침과는 다르게 하위직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하여 2018. 2. 13. 제1차 정기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수규정」내 물가수당을 신설하여 최저 임금과의 차액만을 보전하여 주고 있다.

2) 2018년 최저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2호) : 시간당 7,530원
※ 월 최저임금 : 1,573,770원(209시간×7,530원)

그 결과 2018년 3월 보수지급 현황을 확인한 바, 아래〔표〕과 같이 하위직 일부의 경우 급수·호봉에 따라 기본급과 제수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물가수당 지급에 따라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표〕 2018. 3. 하위직 직원별 보수지급 현황

성 명	급수·호봉	기본급	제수당	물가수당	계
	간호직 8급 1호봉	1,346,400	160,000	67,370	1,573,770
	간호직 8급 2호봉	1,409,500	160,000	4,270	1,573,770
	기능직 9급 3호봉	1,335,400	95,000	143,370	1,573,770
	기능직 9급 4호봉	1,407,300	155,000	11,470	1,573,770
	기능직 특정계약직(8호)	1,134,900	15,000	343,870	1,573,770
	사무직 특정계약직(8호)	1,134,900	15,000	343,870	1,573,770

더욱이 영양직의 경우〔붙임 1〕과 같이 17년의 호봉차 및 조장·조원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는 등 급수별·호봉별로 차등화된 임금체계가 아닌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보수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8. 5. 1. 단체협약을 거쳐 임직원 기본급을 인상하였는데도 여전히〔붙임 2〕와 같이 \$\$\$ 등 7명(8급 2호봉 이하 및 9급 4호봉 이하)은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월 급여로 인해 물가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다.

조치할 사항 포항의료원장은

최저임금 미달 급여 수령자의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붙임 1]

2018년 3월 영양직 직원별 보수지급 현황

	급수·호봉	기본급	제수당	물가수당	계	비고
	무기계약직 19호봉	1,375,710	100,000	98,060	1,573,770	
	무기계약직 17호봉	1,363,680	130,000	80,090	1,573,770	조장
	무기계약직 12호봉	1,329,980	130,000	113,790	1,573,770	조장
	무기계약직 12호봉	1,329,980	100,000	143,790	1,573,770	
	무기계약직 6호봉	1,281,770	115,000	177,000	1,573,770	
	무기계약직 5호봉	1,272,670	115,000	186,100	1,573,770	
	무기계약직 4호봉	1,263,230	115,000	195,540	1,573,770	
	무기계약직 4호봉	1,263,230	115,000	195,540	1,573,770	
	무기계약직 4호봉	1,263,230	115,000	195,540	1,573,770	
	무기계약직 3호봉	1,254,040	115,000	204,730	1,573,770	
	무기계약직 3호봉	1,254,040	100,000	219,730	1,573,770	
	무기계약직 2호봉	1,245,390	100,000	228,380	1,573,770	
	무기계약직 2호봉	1,245,390	100,000	228,380	1,573,770	
	일용직 11호봉	1,322,520	115,000	136,250	1,573,770	

[붙임 2]

2018년 3월~12월 최저임금 수령자 현황

지급월	성명	급수·호봉	기본급	제수당	물가수당	계	비고
5월		기능직9급 4호봉	1,456,550	110,000	7,220	1,573,770	
5월		기능직9급 3호봉	1,849,060	37,500	238,040	2,124,600	
5월		기능직9급 9호봉	1,246,760	30,000	139,640	1,416,400	
6월		기능직9급 4호봉	1,456,550	110,000	7,220	1,573,770	
6월		기능직9급 3호봉	1,246,760	30,000	139,640	1,416,400	
6월		기능직9급 9호봉	1,246,760	30,000	139,640	1,416,400	
7월		기능직9급 4호봉	1,456,550	110,000	7,220	1,573,770	
7월		기능직9급 3호봉	1,316,620	153,860	103,290	1,573,770	
7월		기능직9급 10호봉	1,246,760	30,000	139,640	1,416,400	
8월		기능직9급 4호봉	1,456,550	110,000	7,220	1,573,770	
9월		기능직9급 4호봉	1,456,550	110,000	7,220	1,573,770	
9월		기능직9급 3호봉	1,246,760	30,000	139,640	1,416,400	
10월		약무직9급 3호봉	1,382,130	110,000	81,640	1,573,770	
10월		사무직9급 4호봉	1,456,550	110,000	7,220	1,573,770	
10월		사무직9급 3호봉	1,382,130	125,000	66,640	1,573,770	
10월		기능직9급 4호봉	1,456,550	110,000	7,220	1,573,770	
10월		기능직9급 3호봉	1,246,760	30,000	139,640	1,416,400	
11월		약무직9급 3호봉	1,382,130	110,000	81,640	1,573,770	
11월		사무직9급 4호봉	1,456,550	110,000	7,220	1,573,770	
11월		사무직9급 3호봉	1,382,130	125,000	66,640	1,573,770	
11월		기능직9급 4호봉	1,456,550	110,000	7,220	1,573,770	
11월		기능직9급 3호봉	1,246,760	30,000	139,640	1,416,400	
12월		약무직9급 3호봉	1,382,130	110,000	81,640	1,573,770	
12월		사무직9급 4호봉	1,456,550	110,000	7,220	1,573,770	
12월		사무직9급 3호봉	1,382,130	125,000	66,640	1,573,770	
12월		기능직9급 4호봉	1,456,550	110,000	7,220	1,573,770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장비 구매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의료원장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의료장비 구매 입찰 부적정

의료원 「회계규정」 제166조 및 제166조의2에 따르면 병원에서 집행하는 각종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금지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최근 3년간 의료장비 구입 입찰공고를 하면서 아래 [표 1] 와 같이 특정 제조사의 제품 규격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공고하였다.

그 결과 특정 규격과 일치하는 특정 제조사와 독점 계약된 지역 총판³⁾외에는 모든 의료기기 업체의 낙찰가능성을 사실상 제한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다.

[표 1] 의료장비 구매 입찰공고문 세부내용(5천만원 이상 장비구매)

(단위 : 백만원)

3) 외국 대형의료기기업체와 판권 계약된 회사

품 명	입찰 참가자	낙찰 금액	제조사 (수입원)	낙찰자	낙찰자와 제조사(수입원) 관계
자동생화학분석기	5	115	J	J "	J경남 총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3	149	A	A "	A 내시경부분 대구경북 총판
골절수술대	4	115	B	B "	B 대구경북총판
전동침대	4	180	K	K "	K
마취기,수술환자감시장치	3	107	C	C "	C 대구경북 총판
연성복강경시스템	3	136	A	A "	A 복강경부분 대구경북 총판
체외충격파쇄석기	2	142	D	D "	D 영남권 총판
혈액배양기	2	130	E	E "	E 대구경북 총판
미생물감수성 검사기		110			
원심분리기 등		25			
백내장수술기	2	120	F	F "	F총판
빛광학단층촬영기	2	141	G	G "	G안과부분 대구경북총판
초음파영상진단장치	3	198	H	H "	H대구경북 총판
홀몸레이저수술기	3	99	I	I "	I대구경북 총판

2.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위 관서에서는 의료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및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에 따라 각 진료과로부터 의료장비 구매 수요를 취합한 후 의료원장, 진료처장, 행정처장 등으로 구성된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구매대상 의료장비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각 진료과에서 의료장비를 구매요구 할 경우 의료장비 활용 계획서, 의료장비 구매 자체 평가서, 기준사양 결정서(또는 특정모델 지정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하고, 의료장비의 구매 여부 등을 심의할 때에는 아래 [표 2]의 예시와 같이 구매대상 품목의 규격은 주 성능·기능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구매 우선순위에 대하여 진료상 필수성, 기존 장비의 노후정도 등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2] 의료장비 심의기준 예시

구분	예시	비고
심의대상	- 2,0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등	

구매 결정기준 (우선순위)	가. 신규장비 선정기준 ① 신규 진료과 개설 및 시설 확충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장비 ② 필수의료장비 활용도가 높은 장비 ③ 공공병원으로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정부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활용도가 높은 장비 ④ 병원 운영상 필요한 장비로 활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연 100건 이상)인 장비 나. 교체장비 선정기준 ①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사용불가 장비 ② 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하거나, 수리비용이 잔존가액보다 높아 경제성이 없는 장비 ③ 성능이 충족되지 않아 장비교체가 기존장비 사용보다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 경우	
규격 결정기준	- 미세한 규격차이로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 기능을 기준으로 선정 - 두 개 이상의 제조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통규격으로 선정 - 특정 규격 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 특정 제조사 규격 지정시에는 사유서 제출	
평가항목	진료과 개설 등의 특수상황에 따른 시급성, 진료상 필수성, 유사장비 보유 여부, 예상활용 건수, 공동사용 가능 여부, 예상 유지보수 비용, 예산 진료수익(3년간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장비규격 선정의 타당성 등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 3] 와 같이 2017. 3. 14. 개최된 의료장비 심의회 자료 확인결과 21건의 의료장비 구매건 모두 기준사양 결정서(또는 특정 모델 지정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각 진료과 등에 서류보완 요청하지 않고, 의료장비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다.

그 결과 체외충격파쇄석기, 자동혈액배양기, 미생물 동정 및 감수성 검사기 등의 고가 의료장비가 심의회에서 적정 사양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2018년 교체구입 및 신규구입 되었다.

[표 3] 의료장비 심의회 자료(2017. 3. 14.)

(단위 : 천원)

부서	장비명	수량	예상가격	비고
계		27	906,730	
	자동혈액분석기	1	130,000	교체
	생물안전작업대	1	14,300	신규
	고압스팀멸균기	1	5,500	신규
	원심분리기	1	6,600	신규
	배양기	1	140,000	신규
	미생물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기	1	121,000	신규
	뇌간유발반응검사기	1	32,500	신규
	청력검사실	1	12,500	추가
	체외충격파쇄석기	1	175,000	교체
	요관경	1	19,000	신규
	잔뇨량측정기	1	11,000	추가
	쇄석기	1	27,500	신규
	유방조직추출기	1	44,000	신규
	안과용레이저수술기	1	50,000	신규
	빛간섭단층촬영기	1	90,000	신규
	수술용 배터리 톱	1	18,500	추가
	Nwbulizer - 5wd	1	260	제외
	산소포화도측정기 - 6wd	1	790	제외
	보행보조기 - 7wd	3	620	제외
	Emergency Cart - 3,5,6,7wd	4	3,960	제외
	다기능치료기	2	3,700	추가

조치할 사항

포항의료원장은

앞으로는 의료장비의 주 성능·기능이 아닌 제품 규격서 등을 지정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계약포기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미이행
소 관 청	포항의료원장
관 계 부 서	○○부
내 용	

포항의료원 「회계규정」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의료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원장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7. 12. 29. **메디 @@@와 진료재료 구매계약을 체결 (총부기금액 105,689,590원)하고 이를 집행하다가 2018. 7. 9. **메디 사정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포기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규정과는 다르게 계약해지 절차도 없이 계약보증금 세입조치도 하지 않은 채 2019. 5. 현재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계약상대자는 부당하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면제받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포항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니 아니한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폐기물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의료원장
관 계 부 서 ◎◎부
내 용

포항의료원 「회계규정」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에 따르면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 미성립 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의료폐기물처리를 위해 주식회사 ♠♠환경과 2016. 1. 25. 위탁처리용역을 kg당 450원에 계약체결(계약기간 : 2016. 2. 1.~2018. 1. 31.)하고 이를 집행하다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자 새로운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해 kg당 630원을 기초금액으로 확정하고 2017. 12. 11. 입찰공고, 같은 해 12. 20.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2018. 1월경 수의계약을 체결기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 1. 25. 전년도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환경과 수의계약체결을 위한 가격협상을 하면서 당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630원 이내에서 계약체결하지 않고 ♠♠환경이 요구한 kg당 800원을 그대로

수용하여 같은 해 1. 29.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당초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단가계약이 체결되었고 총부기금액 기준 12,920천 원이 더 비싸게 계약체결*되어 2019. 5. 현재 지출되지 말았어야 할 18,039,310원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 $76,000\text{kg} \times 630\text{원} = 47,880,000\text{원}$, $76,000\text{kg} \times 800\text{원} = 60,800,000\text{원}$

** 2018년 : 13,170,000원 , 2019년 : 4,869,310원

조치할 사항 포항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장례식장 물품 판매가 결정 등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의료원장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위 관서의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에는 아래 [표 1] 와 같이 매년 의료이익이 항상 적자인 상태로 장례식장 운영 등 의료외 수익사업을 통해 적자 폭을 줄이고 있는 등 병원경영에 중요한 사업이었다.

[표 1] 최근 3년간 의료사업 및 의료외사업 손익계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의료수익	22,720,030	23,949,685	25,645,492
의료비용	23,303,328	25,734,392	28,232,789
의료이익	△583,297	△1,784,706	△2,587,296
의료외수익	4,107,704	3,584,039	3,654,561
의료외비용	994,795	1,339,920	1,449,754
당기순이익(손실)	2,529,611	459,412	△382,490
*의료외수익 중 장례식장 수익비중	76%	75%	78%

1. 장례식장 물품 판매가 결정구조에 관한 사항

포항의료원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수가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이하 “제요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병원에서 징수하는 입원료 등과 부속시설 사용료, 제증명 수수료 등 진료행위 및 부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수가를 말하고,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상급 병실료, 영안실 사용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례식장 물품 판매금액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의료원 경영에 중요한 사업의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수익을 위해 장의용품 판매가의 설정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규정을 마련 후 장례식장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장의용품 판매가 결정을 하면서 이사회 안건제출 등 의결 또는 협의절차도 없이 2016. 12. 29. 원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수립된 장의용품 판매가를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관서 정관과 다르게 장의용품 판매가 결정 과정에 이사회 심의 의결 등 아무런 내·외부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2. 장의용품 판매가 조정에 관한 사항

위 관서에서는 2017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장례식장 운영 시 적정 이윤만 취하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례식장 운영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지적받고 2017. 1. 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향후 장의용품 입찰을 통한 납품 단가의 변동에 따라 마진율이 높은 품목은 판매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의 장의용품 판매가 조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판매수요가 없는 수의류 중 일부 물품은 가격을 대폭 할인하고, 판매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류 중 명주와 관류는 가격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장의용품 판매가 조정 내역(2016. 12. 29.)

물품명		입찰단가 (2016)	판매 단가		증감	2016년 연간판매량
			조정전 (2016)	조정 후 (2017)		
수 의 류	홀치기	365,258	600,000	600,000	-	6
	삼배수위(특상)	124,722	500,000	250,000	△250,000	2
	삼배수위(상품)	89,087	400,000	115,000	△285,000	-
	삼배수위(중품)	34,737	150,000	55,000	△95,000	1
	명주수위(특상)	240,536	402,000	402,000	-	13
	명주수위(상품)	160,357	350,000	350,000	-	16
	명주수위(중품)	115,813	300,000	300,000	-	122
관 류	홍송통판(2치)	287,855	600,000	600,000	-	2
	오동통판(2치)	194,166	450,000	450,000	-	42
	오동부판(1.5치)	149,359	220,000	220,000	-	2
	오동부판(1치)	89,615	180,000	180,000	-	285
	향나무(1.5치)1단	448,077	900,000	900,000	-	4
조 화 류	영정사진장식	44,160	100,000	100,000	-	-
	제단장식1호	82,700	220,000	220,000	-	1
	제단장식2호	119,720	300,000	300,000	-	113
	제단장식3호	173,000	550,000	550,000	-	160
	제단장식4호	302,580	800,000	800,000	-	13

더욱이 62개 장의용품 품목 중 51개 품목은 2016년 대비 납품단가가 떨어졌고 나머지 11개 품목은 동일한 납품단가로 납품 단가가 상승한 품목은 단 하나도 없는데도 오히려 9개 품목은 판매단가를 인상까지 하였다.

그 결과 장례식장 이용객들의 실질적인 비용부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위 관서는〔붙임〕과 같이 품목별로 많게는 납품단가의 5배 정도의 과도한 이윤을 남기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포항의료원장은

- ① 장례식장 운영 시 적정 이윤만 취하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의용품 판매가 결정과정에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외부통제방안을 마련 하시고, (통보)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근 3년간 장의용품 취득단가 및 판매가 현황

구 분	년도별 구매단가			년도별 판매가		3년간 구매평균	3년간 판매평균	비고
	16년	17년	18년	16년	17년/18년			
홀치기	365,258	338,670	409,643	600,000	600,000	371,190	600,000	1.6배
삼베수의(특상)	124,722	84,670	71,687	500,000	250,000	93,693	333,333	3.6배
삼베수의(상품)	89,087	38,490	30,723	400,000	115,000	52,767	210,000	4.배
삼베수의(중품)	34,737	19,240	20,482	150,000	55,000	24,820	86,667	3.5배
명주수의(특상)	240,536	215,520	286,750	402,000	402,000	247,602	402,000	1.6배
명주수의(상품)	160,357	138,550	194,580	350,000	350,000	164,496	350,000	2.1배
명주수의(중품)	115,813	100,060	158,271	300,000	300,000	124,715	300,000	2.4배
훗반주	59,687	53,880	81,929	150,000	150,000	65,165	150,000	2.3배
홍송통판(2치)	287,855	236,570	371,338	600,000	600,000	298,588	600,000	2.배
오동통판(2치)	194,166	182,500	213,519	450,000	450,000	196,728	450,000	2.3배
오동부판(1.5치)	149,359	135,180	185,669	220,000	220,000	156,736	220,000	1.4배
오동부판(1치)	89,615	74,350	120,685	180,000	180,000	94,883	180,000	1.9배
향나무(1.5치)1단	448,077	439,350	575,574	900,000	900,000	487,667	900,000	1.8배
염베(고급)	23,154	20,780	25,603	150,000	70,000	23,179	96,667	4.2배
명정(매장용)	16,429	8,110	22,466	60,000	30,000	15,668	40,000	2.6배
명정(화장용)	5,974	5,410	15,782	15,000	20,000	9,055	18,333	2.배
창호지	2,761	2,460	3,380	5,000	7,000	2,867	6,333	2.2배
관줄(가재)	6,762	6,160	9,217	14,000	17,000	7,380	16,000	2.2배
탈지면	4,273	3,770	5,121	10,000	15,000	4,388	13,333	3.배
관보	4,625	3,850	5,586	10,000	15,000	4,687	13,333	2.8배
면모일절	5,337	3,850	3,072	32,000	15,000	4,086	20,667	5.1배
염보	16,919	14,620	20,482	50,000	50,000	17,340	50,000	2.9배
보공	8,011	6,930	9,310	20,000	20,000	8,084	20,000	2.5배
용품	16,919	12,600	19,458	60,000	50,000	16,326	53,333	3.3배
수시포(위생시트)	30,287	13,990	20,482	70,000	55,000	21,586	60,000	2.8배
액자리본	800	1,920	2,765	1,000	5,000	1,828	3,667	2.배
혼백	1,424	1,050	1,862	1,500	3,000	1,445	2,500	1.7배
부의세트	10,684	2,450	12,103	15,000	9,500	8,412	11,333	1.3배
향	1,512	1,390	1,862	6,500	5,000	1,588	5,500	3.5배
양초	2,663	2,310	3,072	3,000	3,000	2,682	3,000	1.1배
촉문	800	700	931	1,000	1,000	810	1,000	1.2배
방명록	5,073	4,460	5,530	10,000	10,000	5,021	10,000	2.배
선두차리본	2,136	1,770	2,765	10,000	7,000	2,224	8,000	3.6배
유골항아리(황토)	62,361	34,990	37,240	150,000	120,000	44,864	130,000	2.9배
유골함(나무)	5,073	4,620	7,169	20,000	15,000	5,621	16,667	3.배
짜지(대나무)	712	620	717	1,000	1,000	683	1,000	1.5배
짜지(버드나무)	712	620	717	1,000	1,000	683	1,000	1.5배
두루막(육수)	5,073	3,850	5,530	12,000	10,000	4,818	10,667	2.2배
두루막(흰색)	4,186	3,000	4,916	10,000	10,000	4,034	10,000	2.5배
바지저고리(흰색)	4,186	3,080	4,608	10,000	10,000	3,958	10,000	2.5배

품목	년도별 구매단가			년도별 판매가		3년간 구매평균	3년간 판매평균	비고
	16년	17년	18년	16년	17년/18년			
와이셔츠	7,700	7,700	8,000	10,000	15,000	7,800	13,333	1.7배
검정양복(대여)	16,300	16,300	16,170	35,000	35,000	16,257	35,000	2.2배
검정여상복(대여)	12,200	12,200	12,890	30,000	35,000	12,430	33,333	2.7배
치마저고리(육수)	5,337	3,500	4,506	11,000	10,000	4,448	10,333	2.3배
치마저고리(흰색)	4,186	3,000	4,506	10,000	10,000	3,897	10,000	2.6배
굴건제복	6,762	5,390	4,655	15,000	10,000	5,602	11,667	2.1배
두건(육수)	351	310	410	1,000	1,000	357	1,000	2.8배
상주두건	351	310	410	1,000	1,000	357	1,000	2.8배
행전	400	310	466	2,000	1,000	392	1,333	3.4배
손자띠	887	700	931	1,000	1,000	839	1,000	1.2배
넥타이	2,000	2,000	3,290	5,000	5,000	2,430	5,000	2.1배
완장	800	350	410	1,000	1,000	520	1,000	1.9배
위패	8,011	7,000	9,310	17,000	17,000	8,107	17,000	2.1배
요절	400	310	410	1,500	1,000	373	1,167	3.1배
수절	400	310	410	1,500	1,000	373	1,167	3.1배
영정사진장식	44,160	44,160	39,070	100,000	100,000	42,463	100,000	2.4배
제단장식1호	82,700	82,700	78,700	220,000	220,000	81,367	220,000	2.7배
제단장식2호	119,720	119,720	119,720	300,000	300,000	119,720	300,000	2.5배
제단장식3호	173,000	173,000	210,490	550,000	550,000	185,497	550,000	3.배
제단장식4호	302,580	302,580	292,580	800,000	800,000	299,247	800,000	2.7배
헌화용 꽃	7,490	7,490	7,490	20,000	20,000	7,490	20,000	2.7배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장의차량 운송업체를 통한 사망자 이송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의료원장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와 18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김천의료원과 안동의료원은 의료원 자체예산으로 특수구급차량 운송업체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사망 장소에서 장례식장까지 사망자 이송에 대해 1건당 70,000원에서 75,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장례식장 절차를 마치고 장지로 출상(발인) 시 이용할 장의 차량은 유족의 배차요청 시 순번제 또는 운송업체 대표자가 직접 배차하는 방식으로 배차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10.부터 2019.4.까지 포항지역 장의차량 운송업체로 하여금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는 다르게 사망자를 장례식장으로 무료로 3회 이송 시 해당 장의 차량 운송업체에 출상(발인) 시 우선 배차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같은 기간 동안 위 관서가 운송업체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비용이 83,160천원(1,188건×70,000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비용을 관내 장의 차량 운송업체에 부당하게 전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2019. 4. 15.부터 응급환자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망자 이송토록 개선하였고, 유족의 장의차량 배차요청 시 형평성 있게 장의차량을 배정하는 등 개선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사망자 이송에 따른 비용을 장의차량 운송업체에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의료원장
관 계 부 서 ●●부
내 용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하여 행정처분(1차 : 경고)을 받고 같은 법 제82조 제3항제3호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1차 : 60만원)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6. 9. 19. (주)△△△△기술을 통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받은 항목과 다르게 새로운 오염물질인 총질소(T-N : 25.228mg/ℓ), 총인(T-P : 0.515mg/ℓ)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7. 10. 16.에도 위 (주)△△△△기술을 통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받은 항목과 다르게 새로운 오염물질인 총질소(T-N : 7.605 mg/ℓ), 총인(T-P : 0.378mg/ℓ)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규정과 다르게 변경신고 없이 폐수처리장을 그대로 운영하여 2018. 1. 15. ▲▲청 지도·점검(방류수 수질검사)시 총질소, 총인 및 철(Fe)이 검출된 사실이 적발되어 포항시로부터 같은 해 2. 7. 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포항의료원장은

앞으로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미리 변경허가신청 하시고,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의료원장
관 계 부 서 ●●부
내 용

포항의료원에서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 ✓✓✓-✓, ✓✓✓-✓번지 (이하 3필지라고 한다.) 국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사용하고 있던 중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지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붙임 1] 과 같이 2017. 9. 15.과 9. 25. 변상금 및 연체이자를 각각 54,376,770원, 35,867,740원, 계 90,244,510원을 납부하였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제72조 제73조에 따르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변상금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관서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1991년 의료원 본관 증축 시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의료원 부지 내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본관 증축으로 인해 건물 면적에 들어가는 국유지(용흥동 ✓✓✓-✓번지 외 2필지)를 포항시와 매매 계약체결 후 매입하였으나, 위 3필지는 매입하지 아니하고 의료원 주차장, 화단, 보행로 등으로 무단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8. 9.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조사팀에서 3필지 현장을

방문조사 후 변상금 및 부지 대부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같은 해 8. 21.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 9. 18. 국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 변상금 부과를 고지 받았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같은 해 9. 11. 의료시설 부지 내 무료주차장 용도의 공익 시설임과 평온·공연하게 사용하여 왔던 사정 등을 이유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고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9. 2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으로 포항의료원의 이의제기는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2013. 1. 15.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 변호사 등 2명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부과된 변상금을 우선 납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등의 법률자문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사실을 알았으면 국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사용허가신청 등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리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발생되었다면 연체료가 누증되지 않도록 신속히 변상금 납부 조치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당시 의료원장이 변상금 납부 필요성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사유로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신청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한 이행노력 없이 변상금 납부시한을 고의적으로 지체하여 연체이자가 누증되게 책임을 회피하고 국유지를 계속적으로 무단점유하였다.

그 결과 연체이자는 지속적으로 누증되었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런 뒤 2017년경 국가지정 격리(음압)병동 확충 신축공사 건축허가 건이 위 3필지 미확보로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면적부족으로 불허되는 시점에서야 부족한 대지면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제서야 위 관서에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8. 23. 국유 점유부지 매수 및 변상금 납입을 위한

세출예산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안건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해 9. 25. 한국자산관리공사와 3필지 매매계약(금액 535,717,000원)을 체결하고 국유재산을 매입하였다.

그 결과 뒤늦은 매매계약으로 누증 연체이자 23,179,780원과 2012. 9. 19. 이후 기준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35,867,740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었고,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최소한 14,196,600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불러왔다.

조치할 사항 포항의료원장은

앞으로는 불필요한 연체이자 등을 지출하여 병원재정에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